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의약외품 표시·광고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 개정 알림

1. 의약외품 표시와 관련된 총리령 개정 시행사항 및 광고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「의약외품 표시·광고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동 안내서는 우리 처 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)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「의약외품 표시·광고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 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본부(57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2개 전부서), 한국제약바이오 협회, 한국외약품수출입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대한화장품협회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, 관할 시·도지사

주무관 **박경제** 사무관 **현미영** 의약외품정책과 전결 2025. 4. 14.
과장 **송현수**

협조자

시행 의약외품정책과-1721 (2025. 4. 14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707 팩스번호 043-719-3700 / grw26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